

V-2 자전거

1. 자전거를 구입한다

자전거는 자전거판매점이나 홈 센터 등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구입한 판매점에서 방법등록을 해야 합니다. 방법등록료는 1대 600엔입니다.

2. 자전거를 세워 두는 방법

자전거는 보행자 등 다른 사람의 통행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세워야 합니다. 특히 역 주변은 조례에 의하여 자전거를 세우면 안된다고 정해진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에 세우면 특히 노인이나 눈이 불편한 사람의 역 이용의 방해가 됩니다.

위반해서 세우면 자전거가 강제적으로 지정된 보관장소로 철거될 수도 있습니다. 철거되면 보관료나 이동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자전거를 돌려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철거 후 일정 기간 보관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자전거를 인수하려 가 주십시오. 자전거가 철거된 장소, 날짜를 말하고 자전거를 인수할 장소나 요금, 시간을 시구청총사무소에서 확인하여 주십시오. (⇒부록IX-1)

3. 자전거를 도난 당했을 때

만약 자전거를 도난당하면 근처에 있는 파출소에 신고합니다. 도난을 맞은 자전거가 발견되면 경찰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자전거에는 주소와 이름을 쓰도록 합니다.

4. 버려진 자전거를 타지 않는다

만일 자전거가 버려져 있어도 그것은 누군가가 훔쳐서 방치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자전거 도난신고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 그 자전거를 타고 있으면 트러블에 말려들 수 있으므로 버려진 자전거는 타지 않도록 합니다.

5. 교통규칙

자전거의 통행은 원칙적으로 차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차도에서는 왼쪽으로 붙어 통행해야 합니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신호도 지켜야 합니다. 음주운전이나 2인승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6살 미만의 유아 한 명을 유아용승차장치에 태워 16살 이상의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를 제외함)

보도는 통행가능의 표시가 있는 장소 이외는 원칙적으로 통행할 수 없으나, 차도를 통행하기가 위험한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는 보도의 중심부터 차도가를 통행하여 보행자의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 혹은 자전거에서 내려 주십시오.

야간에는 반드시 라이트를 켜고 타도록 합니다. 오사카부에서는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2016년 7월 1일 시행된 오사카부 자전거 조례에 의해 오사카부내에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은 자전거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해야만 합니다.